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물질명: p-아미노벤조산, WET (Aminobenzoic Acid-P)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등.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음용불가.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공급자 정보

공급자 : OCI 주식회사

공급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소공동), TEL : 02 - 727 - 9494

담당부서 : PEROXIDE/SC사업팀

2. 유해성·위험성

1) 유해성·위험성 분류 폭발성 물질 : 등급 1.3

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03 폭발성 ; 화재, 폭발 또는 분출 위험

예방조치문구

예방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0 젖은 상태를 유지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50 연마·충격·마찰을 피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70+P380 화재 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P372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P373 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저장

P4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3)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보건

1

화재

1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p-아미노벤조산, WET
이명(관용명)	OHS85669;
CAS 번호	150-13-0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 | | |
|----------------|---|
| 1)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 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 2) 피부에 접촉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십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 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 3)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십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
| 4) 먹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 5)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폭발성 ; 화재, 폭발 또는 분출 위험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화재 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십시오
화물에 불이 붙은 경우 폭발하여 파편은 1,600m 이상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타이어/차량 화재의 경우 다량의 물을 퍼붓고, 물이 없다면 CO2, 건조화학적제, 흙을 이용하십시오
타이어/차량 화재의 경우 위험하지 않다면 적재장소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최대거리에서 무인 호스를 사용하십시오
타이어/차량 화재의 경우 재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화물에 불이 붙은 경우 모든 통행을 막고 모든 방향으로 최소한 1,600m 대피하십시오
화물에 불이 붙은 경우 화물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소화하지 마시오

2)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6000 mg/kg Rat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Group 3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개에서 2~3g/Kg b.w 로 투여하였을때 급성 간 괴사가 보였으며, 위장관 출혈이 보였다.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생태독성

어류 LC50 2419.478 mg/ l 96 hr

갑각류 LC50 17.947 mg/ l 48 hr 기타 (Daphnid)

조류 자료없음

2)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log Kow 0.83

분해성 자료없음

3) 생물농축성

농축성 BCF 3

생분해성 74 (%) 14 day

4)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5)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1)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2)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 유엔번호(UN No.)	3335
2) 적정선적명	기타 항공규제위험물(고체)(AVIATION REGULATED SOLID, N.O.S.)
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4) 용기등급	-
5)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6)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규규제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기타 참고자료

- 1) 자료의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상품대사전 - 가나다화학,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소방방재청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 2) 최초작성일 : 1996.05.02

3)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개정 번호 : 7

최종개정일자 : 2017. 08. 01

제공된 정보는 제품에 대한 현상태의 지식과 경험에 따른 것으로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명세에 따르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배합 및 혼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용자는 제품, 개인 위생, 인류 복지와 환경 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 행정, 규제 절차를 준수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